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및 실무자료

황영환 / 대한설비건설협회 기술지원실 부장

건설공사원가계산에 필요한 실무자료를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발췌하여 게재하오니 건설공사 원가계산시 많은 활용 바란다.(편집자 주)

1. 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

I. 간접노무비 실무자료

(회제 2210-591, '89. 3. 8)

〈공식〉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 간접노무비의 계산

(근거규정)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4조, 제8조, 제16조, 제25조

1 직접계산방법

가. 계상기준

-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나. 계상방법

(1) 노무비단가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총당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 시중노임단가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직종의 단가는 동 기준중 유사한 직종의 단가에 의함.

(2)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 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 ①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수 있는 배치인원은 1)현장소장, 2)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3)기획·설계부문 종사자, 4)노무관리원, 5)자재·구매관리원, 6)공구담당원, 7)시험관리원, 8)교육·산재담당원, 9)복지후생부문 종사자, 10)경비원, 11)청소원 등을 들수 있음.
- ②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설계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 반영 처리 함.

2. 비율분석방법

가. 계상기준

- (1)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함.
- (2) 위 직접노무비에 원가계산서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간접노무비율, 즉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를 곱하여 계산함
 $\langle \text{공식} \rangle \text{ 간접노무비} = \text{표준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즉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나. 간접노무비율의 계상방법

- (1)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규모, 내용, 공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 (2)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하는 방법
 - ① 개별(현장별)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임금대장을 확보한다.
 - ② 확보된 임금대장상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성 있게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다.
 - ③ 동 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상한다.
 - ④ 계상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서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 (3) 업체로부터 직·간접노무비가 구분된「직·간접노무비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 임금대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위 계상방법에 대한 보완적용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에서 제시한 직접계상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동 비용을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를 계상할 수 있다.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및 실무자료 ②

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

구 분		간접노무비율(%)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14.5
	토목공사	15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기타(전문·전기·통신 등)	15
공사규모별 *품셈에 의하여 산출되는 공사원가기준	5억원 미만	14
	5~30억원 미만	15
	30억원 이상	16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13
	6~12개월 미만	15
	12개월 이상	17

활용예시(공사규모가 10억원이고 공사기간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II. 경비의 계산

2. 계상방법(단순배분처리방법 예시)

(근거규정)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 17조, 제25조

가. 원가계산자료인 개별(현장별) 원가명세서를 확보한다.

1. 계상기준

나. 동 명세서상의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복리후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다.

가. 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산출가능한 비목은 이에 의하여 계산한다.

[예시]

나. 그 이외의 비목은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영수증 등을 근거로 예정하거나 또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공사원가명세서등)를 분석한 후 비율산정하여 계산한다.

- 재료비 : 60
- 노무비 : 20
- 경 비 : 20
- 복리후생비 : 1.5

[공식] 복리후생비율 = 복리후생비 / (재료비+노무비)
= 1.5 / (60+20) = 1.87%

* 경비비목 원가계산시 그 처리기준은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준칙”에 따르되, 그 기법처리는 기업회계방식을 활용

*동 명세서상에 외주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석할 필요가 없음. 그 이유는 위의 복리후생비

율이 하도급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분석되기 때문임.

*위 비율은 2개업체 이상의 평균치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다. 발주목적물의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계액에 “나”에서 산정한 비율을 곱하면 복리후생비가 계산된다

[공식]

복리후생비 =(발주목적물의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계액) × 복리후생비율

*이와 같은 비율의 적용방식은 동비율의 합리적인 산정이 주요 과제인바, 특정 업체의 원가계산 자료에 의하여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자의적이 되기 쉽기 때 문에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 자료(한국은행발간 “기업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발간 “완성공사원가분석”)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노동부 고시 제 2002-34호, 2002.12 31)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법"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의 실태 등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총67개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

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근로복지 공단이사장 (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을 이 예시표상의 어떠한 사업종류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질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이사장이 1차적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다만, 이사장이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한다.

제4조(보험요율의 적용) ①사업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요율(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되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요율의 적용은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리업의 경우는 해당수리대상물품의 제조업에 분류한다.

②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보험요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중 최종공작물(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공사(이하 이 호에서 "주된 공사"라 한다)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총공사중에 주된 공사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2,0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있고 그 공사가 사업종류를 달리할 때에는 달리한 사업종류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2. 제1호 단서 및 영 제61조 제1항 단서의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함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중복되지 않은 상태(동일위험권내에 있지 않은 상태)를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이라 함은 보험료 및 보험금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노동자수 및 임금총액이 각각 명백히 구분되어 파악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2이상 분할 도급하여 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요율의 적용은 규칙 제76조 제1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단일 도급공사 또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가 총공사로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요율의 적용은 제76 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일괄적용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종류로 분류된 건설공사를 행할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종류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③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요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규칙 제5조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 ④ 적용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요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용건축물(기숙사)661㎡ 이하, 기타 건축물(공장)495㎡ 이하 규모의 건축공사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적용한다.
 2. 제1호이외의 건설공사(기계장치공사, 중기설비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등)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적용한다.

제5조(시행기간) 이 요율표의 시행기간은 2003년 1월1일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2002. 6. 27)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①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 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사서비스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중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법 제19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2003년도 적용 산재보험요율

사업의 종류	요율
건설업	6/1000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29/1000

3.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동부 고시 제 2002-35호, 2002.12 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도 노무비율

-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9%
- 하도급노무비율 : 하도급공사금액의 34%
- 적용기간 :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 1. 위의 노무비율은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에 의한 노무비율에 준용한다.

2. 위의 노무비율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으로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노무비율에 의거 산정된 임금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90%를 임금으로 결정한다.
3. 노무비율은 개산보험료 산정시, 하도급노무비율은 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한다.

4.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2002 - 15호, 2002. 7.22)

제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조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

다)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3. 이 고시에서 “근로자”라 함은 건설사업장 소속 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

② 기타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영·규칙·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제2장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기준) ① 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로서 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미만 또는 50억원이상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C)을 합한 금액

- ②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 ③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자기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③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④ 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삭 제>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별표 2의 본사사용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4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 이상의 별도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사 용 기 준
<p>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출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 고정식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 덤프트럭, 이동식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 비계해체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신호수의 인건비는 제외 •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 (월 급여액의 10%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용 리프트·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함) - 굴착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이상인 암석굴착 작업 -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이상에 한함)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이상에 한함)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전압이 75볼트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 기타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 2의 안전담당자 지정작업 ※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외의 인건비는 제외 •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 ※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처리원,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는 제외 	<p>안전관리비 총액의 40%이하</p>
<p>2. 안전시설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안전난간 	<p>안전관리비 총액의 50%이하</p>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및 실무자료 ②

항 목	사 용 내 역	사 용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락방지용 방망 - 안전대걸이용 로우프 - 개구부 덮개 - 위험부위 보호덮개 -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철크스, 가설울타리 등 ※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제외 -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제외 •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선반 - 낙하물방지망 또는 수직보호망 - 경사법면 보호망 (덮개) -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탑, 무재해기록판, 안전수칙판, 안전완장, 안전스티커,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유도등 - 야간작업시 전자신호봉 및 경광등 - 추락·낙뢰 등 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위험경보기 - 기타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철크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 •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진설비, 방음설비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울러기, 승강기,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데릭 등의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 목재가공용 동근톱의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접촉예방장치 - 연삭기의 덮개 - 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및 실무자료 ② ◀◀◀

항 목	사 용 내 역	사 용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 •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 •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 전신주 이설비 등은 제외 •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 검전기 및 절연봉 설치 또는 구입 비용 •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전선거치대 또는 보호덮개 등 시설 •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 • 가설사무실,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 · 화재경보기 • 리프트 무선 호출기 · 자동운전장치 •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 기계 · 장비 등의 진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 철근, 파이프, 크래프 등 돌출부에 찰림방지를 위한 캡 등 시설 • 안전보건시설의 구입 · 설치 · 유지 · 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 •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위험기계기구 검사후 개선에 필요한 비용 •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 타법 적용사항 제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p>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 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등 위생보호구 - 용접용토시(자켓),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 - 해상 · 수상공사에서 구명조끼, 튜브 등 ※ 순시선, 구명정 등은 제외 •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인 경우에 한함) 	<p>안전관리비 총액의 30% 이하</p>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및 실무자료 ②

항 목	사 용 내 역	사 용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 • 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고무소매, 절연의 ※ 면장갑, 코팅장갑은 제외 • 철골, 철탑작업용 고무바닥 특수화 •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4. 사업장의 안전 진단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소농도측정기 - 환선근접 작업경보기 - 가스자동측정기 (휴대용에 한함) -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각종 가스탐지기 - 조도계, 누전측정기 등 -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은 제외 •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 • 법 제33조 및 영 별표 7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 자재의 안전성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영 제4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업무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완성검사·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 안전경영 진단비용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진단비용 	안전관리비 총액의 30% 이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및 보수 • 안전관리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및 보수 •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감독자정기교육 - 근로자정기교육 - 신규채용시교육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및 실무자료 ② ◀◀◀

항 목	사 용 내 역	사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안전교육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 양성교육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 -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함) - 흙막이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 - 기타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작업 • 교육교재, 교육용팜플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건설안전참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수당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1/25이내) •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 현장내 안전교육시 음료수 비용 •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 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 • 안전교육장 책·결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 (견학포함) •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 안전지원체에 소요되는 비용 (년 2회 이하) ※ 기공식, 준공식 등 무재해지원과 관계없는 행사 제외 •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및 실무자료 ②

항 목	사 용 내 역	사 용 기 준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 사진 및 인화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서식비 등 기타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6. 근로자의 건강 관리비 등	•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 •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작업중 휴한·휴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 숙사 또는 현장사무소내의 휴게시설 제외 •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이동화장실, 급수·세면·샤워시설,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제외	안전관리비 총액의 20%이하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대가	안전관리비 총액의 20%이하
8. 본사 사용비	• 안전관리비 총액의 2%이내에서 제1호 내지 제7호 사용항목 및 본사 안전전담 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	안전관리비 총액의 2%이하

주) 장기계속계약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 정 율	30% 이상 50% 미만	50% 이상 70% 미만	7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사용기준	30%이상	50%이상	70%이상	공정율 이상

주)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기술지도 대가 및 횡수기준

공사금액 \ 구분	기술지도 대가	기술지도 횡수
40억원미만	1회당 155,000원	공사기간 중 월 1회
40 ~ 100억원미만	1회당 209,000원	
100 ~ 150억원미만	1회당 246,000원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일반건설 공사(갑)	<p>□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건설,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를 현장내에서 행하는 공사</p> <p>1. 건축건설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및 교량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목조, 연와조, 블록조, 석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건물 건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신설공사와 그의 보수 및 파괴공사 또는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 주택, 축사, 가건물, 창고, 학교, 강당, 체육관, 사무소, 백화점, 점포, 공장, 발전소, 특수공장, 연구소, 병원, 기념탑, 기념건물, 역사 등을 신축, 개축, 보수, 파괴, 해체하는 건설공사 ○ 철골,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조 가옥을 이축하는 공사 ○ 구입한 철파이프를 절단, 벤딩(구부림), 조립하여 축사 등을 건설하는 공사 ○ 건축물 설비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건축물내외에서 행하는 설비 또는 부대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건축물내외의 전기, 전등, 전신기 등의 설비공사 • 당해 건축물내외의 송배전선로, 전기배선, 전화선로, 네온장치 등의 부설공사 • 당해 건축물내외의 급수 및 급탕 등의 설비공사 • 당해 건축물내외의 안전 및 소화 등의 설비공사 • 당해 건축물내외의 난방, 냉방, 환기, 건조, 온습도조절 등의 설비공사 • 당해 건축물의 도장공사 및 시멘트 취부 방수 공사 • 당해 건축물의 설비를 위한 석축, 타일, 기와, 슬레이트 등을 부설하는 건설공사 • 당해 건축물내의 냉동기의 부설에 일관하여 행하여지는 난방 및 냉동 등의 시설에 관한 공사 • 건물내의 아이스스케이팅 설비에 관한 공사 • 기타 건축물의 설비공사 - 내장, 유리, 온창, 조원 등의 기타 전문 제공사 ○ 교량건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교량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및 실무자료 ②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p>일반건설 공사(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교량의 보수와 개수에 관한 공사, 교량에 교각, 교대 등의 기초 건설공사, 기타 교량의 보수 공사 - 선창의 건설공사 2. 도로신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공사 -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공사 - 시설도로의 변경, 굴곡의 제거 및 확장공사 - 도로 및 광장의 포장공사(사리살포공사 포함) 3. 기타 건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다만, 철도 또는 궤도의 신설공사에 단순히 노무구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건축건설공사, 도로신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수력발전시설 및 댐시설 이외의 제방건설공사 - 시설터널의 보수 및 복구공사 - 시설의 도로, 철도, 궤도 등의 개수, 복구 또는 유지관리의 공사 (시설 노면에 레일만을 부설하는 공사 및 노면표시공사 포함, 제설공사는 제외) - 구내에서 인입선공사, 증선공사 등 - 옹벽축조의 건설공사 - 시설도로 또는 플랫폼 등의 포장공사 (사리살포, 잔디붙이기 공사 등 포함) -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 - 하천의 연제(연제 : 제방도로), 제방수문, 통문, 갑문 등의 신설개수에 관한 공사 - 관개용수로, 기타 각종 수로의 신설개수, 유지에 관한 공사 - 운하 및 수로 또는 이의 부속건물의 건설공사 - 저수지, 광독침전지 수영장 등의 건설공사 - 사방설비의 건설공사 -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암벽 등의 건설공사 (중건설공사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이외의 공사) - 호반, 하천 또는 해면의 준설, 간척 또는 매립 등의 공사 - 비행장, 골프장, 경마장 또는 경기장의 조성에 관한 공사 - 개간, 경지정리, 부지 또는 광장의 조성공사 - 지하에 구축하는 각종 물탱크의 건설공사 (기초공사 포함) - 철관, 콘크리트관, 케이블류, 가스관, 흙관, 지중선, 동재 등의 매설공사 - 침몰된 공작물의 인양공사 - 수중오물 수거작업공사 -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 (건설공사를 위한 시추공사를 포함하나 광업시추 및 시굴공사는 제외) - 각종 운동장 스탠드 건설공사 - 체토사(쌓여서 막힌 흙과 모래)의 붕괴 및 낙석 등의 방지벽 건설공사와 이와 부대하여 당해 공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및 실무자료 ② ◀◀◀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p>일반건설 공사(갑)</p>	<p>시장 내에서 행하는 각종 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선교(구름다리)의 건설공사 - 철탑, 연돌(굴뚝), 풍동 등의 건설공사 - 광고탑, 탱크 등의 건설공사 - 문, 담장, 축대, 정원 등의 건설공사 - 용광로의 건설공사 - 전차궤도의 송전가선의 건설공사와 그 보수공사 - 송전선로, 통신선로 또는 철관의 건설공사 및 기계장치의 산세정 공사 - 신호기의 건설공사 - 하수도관 세척공사 - 무대셋트 제작, 조립, 도색, 도배, 철거공사 -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 - 일반 경상보수의 용역사업은 이에 분류 <p>○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타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p>
<p>일반건설 공사(을)</p>	<p>□ 각종의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p> <p>1. 기계장치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 각종의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초처리 공사 -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계대 건설공사 - 보일러, 기중기, 양중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 전기수진기, 공기압축기, 건조기, 각종 운반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 석유정제장치, 펌프제조장치 등과 같은 기계·기구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 삭도 건설공사 - 화력 및 원자력발전시설의 설치공사 - 변전소 설치 및 수리공사 - 기타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 또는 해체공사 - 기계장치의 수리공사 -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공사 - 화력, 원자력 및 수력발전소의 수리공사(단, 산세정공사 제외) -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도시가스제조 및 공급설비공사 - 통신장비(컴퓨터 통신장비 포함)의 설치, 이전, 철거공사
<p>중건설공사</p>	<p>□ 고제방(댐), 수력발전시설, 터널 등을 신설하는 공사</p> <p>1.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방의 기초지반(터파기 밀나비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최심부 : 기초지반의 최심부는 말뚝 선단의 위치임. 다만, 잔교식공법의 경우는 제외)에서 그 정상까지의 높이가 20m 이상되는 제방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및 실무자료 ②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중건설공사	<p>및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압벽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방의 신설에 관한 가설공사 또는 기초공사 - 제방의 신설공사장내에서 시공하는 제방체, 배사구(쌓인 모래를 내보내는 출구), 가제방, 골재채취, 송전선로, 철탑, 발전소, 변전소 등의 시설공사 - 제방공사용 자재의 운반을 하기 위한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건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취수구, 배수로, 가배수로, 여수로, 하수구의 복개, 물탱크 등의 취수시설에 관한 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수력발전시설용의 터널 또는 토석제방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기설의 수력발전소의 수로를 이용하여 유수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시공하는 저수지의 신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의 각종 기계의 철관의 조립 또는 그 부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홍수조절 관계용수로 또는 발전 등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댐 건설공사 - 제방의 신설공사를 건설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업자의 사무소, 종업원의 숙소, 취사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 -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압벽 등의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p>2. 수력발전시설 설비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분야에서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고제방(댐) 신설공사 및 터널신설공사 등과 이 공사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 현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에 관한 가설공사 또는 기초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장내에서 시공하는 제방체, 배사구, 가제방, 골재채취, 송전선로, 철탑, 발전소, 변전소 등의 건설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 자재의 운반을 하기 위한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건설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에 따른 취수구, 배수로, 가배수로, 여수로, 하수구의 복개, 물탱크 등의 취수시설에 관한 공사 - 수력발전시설용의 터널 또는 토목제방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 - 기설의 수력발전소의 수로를 이용하여 유출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시공되는 수력발전조절지(저수지)의 신설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 배치플랜트, 시멘트 사이로, 골재 운반용의 벨트, 콘베이어 등의 기계와 철관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 수력발전시설에 따른 홍수조절관개용수보급 또는 발전 등의 사업을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댐 시설공사 - 수력발전의 신설공사를 위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사무소, 종업원의 숙소, 취사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 - 기타 삭도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및 실무자료 ② ◀◀◀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중건설공사	<p>3. 터널신설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널신설에 관한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내면설비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널신설공사 현장내에서 시공하는 가설공사, 갱도굴착공사, 토사 및 암괴지(암괴지 : 바위지역)의 운반처리공사, 배수시설공사 또는 터널내면설비공사 - 터널신설공사 현장내에서 시공하는 노면포장, 사리의 살포, 궤도의 신설, 건축물의 건설, 전선의 가설, 전등 및 전화의 가설 등의 건설공사 ○ 지반에서 10m이상의 지하까지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사업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굴착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및 지하도신설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또는 궤도신설, 고가 및 지하철도 등을 신설하는 공사 1.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또는 궤도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및 궤도의 건설용 기계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 철도 및 궤도 신설공사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 등의 건설공사 2. 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골조, 철근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고가철도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 현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지반으로부터 10m이내의 지하에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또는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구내에서 인입선 공사, 증선공사와 철도, 궤도의 보수복구 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에 분류 ※ 이 공사에서 신설이란 신설선의 건설, 단선을 복선으로 하는 경우 등 신설형태로 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다음의 공사(타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별지제 1호 서식】

(앞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사명	
소재지		대표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주자		누계공정율	%
계상된 안전관리비	원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 기준 금액	원 (안전관리비×별표3 사용기준)
사 용 금 액			
항 목	()월 사용금액	누계사용금액	누계사용비율(%)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제 1호 서식】

(뒤쪽)

항목별사용내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 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 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 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구	분	전전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사 용 금 액				
항 목			금 액	
			금 월 분	당해년도누계
소 계			사업장	본사
			사업장	본사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안전전담부서 운영비 등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뒤쪽)

항목별 사용내역 및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 항목별 사용내역

항 목	사 용 일 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8. 본사안전전담부서 운영비 등			

□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 붙임 : 본사조직규정,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사용영수증